

도로심의관 도로건설과

도로사업감리비의효율적인집행을위한세부지침

1. 감리원 인원 운영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24호, '95. 1. 24)에 의한 감리원 최소배치 기준상 도로사업인 경우 현장상주 5인(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4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등이 지연되거나

-동절기, 해빙기에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등에는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인원을 감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하기 바람.

※ 사례 : 모 현장의 경우 공사비 5억원 집행에 2억 4천만원의 감리비를 사용함으로써 감리비 과다 지출

2. 통합감리(투심 4120-66, '95. 3. 8. 참조)

가. 신규공사가 인근에 수개 있을 경우는 통합감리함으로써 감리원의 수를 감할 수 있어 감리시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니 통합감리를 시행할 것.

※ 사례 : 창선 - 삼천포 구간은 2개 공구를 1개 회사가 통합감리

나. 신규공사가 기시행중인 공사화 인근위치 할 경우는 통합감리

다. 기시행중인 구간도 통합감리가 기승할 경우에는 통합감리방안을 강구시행바람

3. 감리비 조정 집행(투심 41620-66, '95.3.8)

가. 구간별로 내시된 감리비는 예산내시 작업시 만든 기초자료에 불과하니 총액범위 내에서 시행청장의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기획관리실과 도로심의관실)에 보고하기 바람

- 내시된 감리비가 공사공종에 따라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 추가사업비가 배정되어 감리비가 부족할 경우

단, 감리비가 총액내시된 범위나 총액계약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4. 감리대상공사의 선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가. 위에서 규정한 사항중 「계약공사비 50억원미만으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선정할 때에는 현장여건,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

나. 지나치게 감리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것

※모 현장의 경우 2차선도로 전체연장 760M중 교량연장이 135M(9경간×15M, 직접기초, 상부 RC슬래브교)로서 전체 공사비는 1,413백만원이며, 감리용역은 3인투입에 감리용역비 276백만원(공사비의 19.5%)으로서 감리원 투입시점이 교각 8기중 7기가 완료된 시점이었던 바 이는 감리 투입시점이 교량의 가장 중요한 공종인 기초공사 시점이 지난 것으로 효율적인 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구조물로 보기 어려운데도 과도한 감리원이 투입된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 1항 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적합치 않음

5. 감리근무시 유의사항

가. 감리용역을 PP 또는 PQ로 발주할 경우 PP 또는 PQ 인력심사에 제출된 기술자는 필히 현장에 투입되어 상주근무토록 할 것.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종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로 할 것)

나. 감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감리용역비를 지급치 않고 감리원을 근무케한다는 내용을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여 감리원의 공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다. 발주처에 이미 명단이 제출된 감리원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타 현장등에 이종으로 등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라. 연장 상주감리원의 근무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

- 감리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외출, 조퇴 등 근태상황을 기록 유지
-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부착하고 당일 현장근무위차, 업무내용 등을 기록
- 감리원이 현장을 이탈시에는 필히 발주기관에 그 사유 등을 보고한 후,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결근시는 시공업체 현장대리인들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마. 감리원의 자질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감리교육을 강화할 것

- 감리교육의 의무화
- 직무(기술, 행정)교육 강화
- 특집, 고급, 중급, 초급반으로 구분하여 교육
- 특별 정신교육 강화

바. 감리원에 대한 수행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비치·관리토록 할 것.

사. 감리원에 대한 근무는 다음 지침에 의하도록 할 것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수 감리에 임하여야 함
-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

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의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시공자에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감리원은 공사연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그 즉시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감리원이 실정보고시에 일부 감리회사에서는 사전에 감리회사 대표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현장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실정에 대한 보고사항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이에 대한 방침을 득하도록 조치할 것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 5항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담당관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 반드시 감리자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현장 실정보고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 이를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차. 감리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시정지시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실정에 따라 시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우선 구두지시에 의하여 이를 지시부등에 기록하여 추후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

(도건 58710-265, '95.3.17)